

제4절 환경오염 예방

1. 환경영향평가 제도

1) 개요

환경은 일단 한번 파괴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복구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경제활동을 제약하게 됨으로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 예방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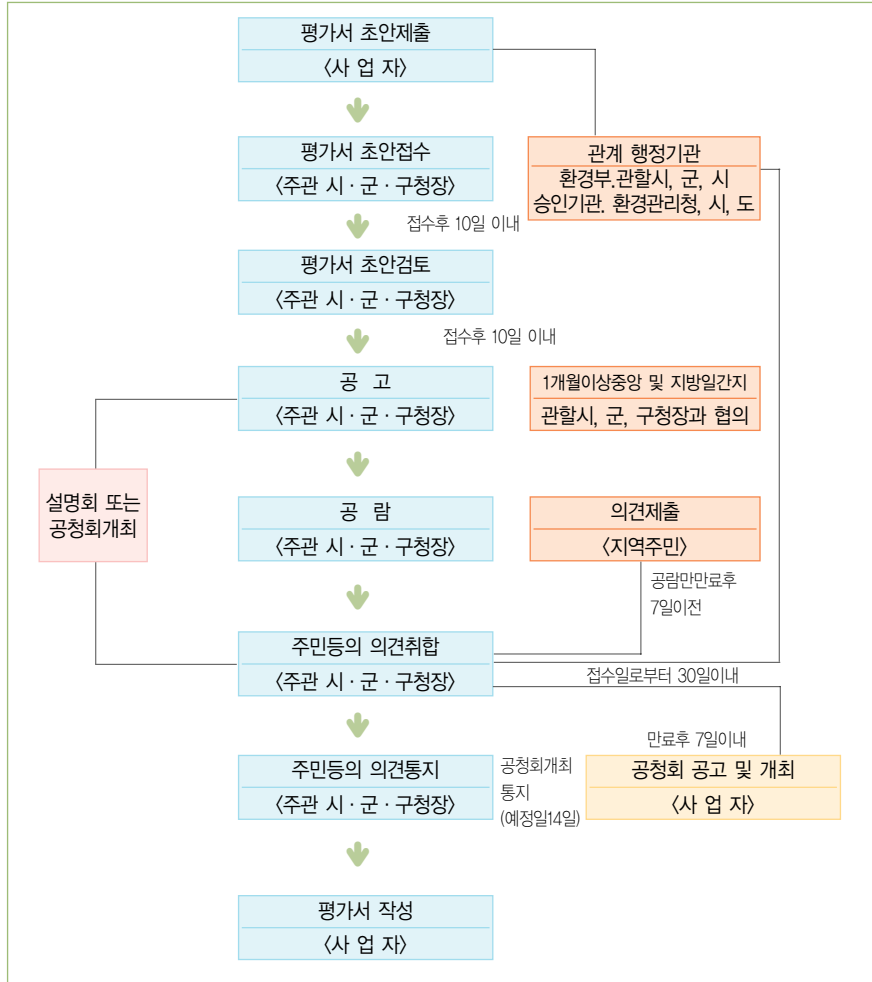
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계획 과정의 일환으로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해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 등과 함께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업계획안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특정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미리 예측하여 그 결과를 공포,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충분한 환경보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ESSD)이 되도록 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제도 및 운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7조에서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을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을 대행하고 있다.

주민의견 수렴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의 직접적인 피해자이자 당해 지역설정에 밝은 주민(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내의 주민으로서 주민등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을 말한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말하며,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 및 재산상의 환경피해를 파악하여 이해관계를 사전 조정함은 물론 작성의 내실화에 기여하게 된

다. 현행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령에 규정된 주민의견 수렴절차는 아래와 같다.



※ 주민의견 수렴 절차

환경영향평가서는 대상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등의 기본결정이 이루어진 후 협의·작성되어야 하며, 현행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는 평가서의 제출시기 및 협의 요청시기를 대상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조)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시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01년 1월 1일부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제정되어 현재 운용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작성되도록 되어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업자가 환경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에게 의뢰하여 작성하고 있어, 평가서의 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설립(97. 9. 8) 운영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하겠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규제가 아니라 사업자 스스로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환경영향을 예측·평가하여 저감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으며 협의된 내용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현행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는 사업시행과정에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중지 등 필요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규제가 아니라 사업자 스스로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환경영향을 예측·평가하여 저감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2. 개발사업 환경성 검토

1) 개요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시행되는 사업은 사업관련 주변 환경영향을 사전에 예측 분석하여 주변 환경오염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평가대상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주변환경영향을 고려치 않고 사업이 실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개별 법령에 협의의 근거가 없거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범위 미만이라 하더라도,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차원의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그 방안의 하나로 환경영향이 민감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시행되는 중·소규모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 검토에 관한 규정』을 국무총리훈령 제270호(93. 1. 7) 제정 및 제299호(94. 6. 24)로 개정하여 운용하여 오던 것을 환경정책 기본법의 개정(1999. 12. 31), 동법 시행령 개정(2000. 8. 17)으로 사전협의 대상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종류, 규모 및 협의시기를 정하여 보다 적극적인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2) 대상사업 및 협의방법

지역중합개발·산업·교통·관광·에너지개발·농림수산 정책 등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계획 수립의 최초 단계에서부터 환경보전을 고려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의 의견반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행정계획을 승인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보전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계획의 승인 전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법 관계규정에 따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종류·규모·협의시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지역·도시의 개발, 단지조성 등의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5,000㎡이상의 개발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계획 사업의 지정, 확정 전 허가, 승인 또는 확정 전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협의대상인 행정계획 또는 사업을 승인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결정 또는 승인 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관할구역 지방환경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표1-181〉

환경성검토 협의대상지역 및 개발사업 규모

관련법	지역별	사업면적(㎡)
국토이용관리법	자연환경보전지역	5,000이상
	농림지역	7,500이상
	준농림지역	10,000이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발제한구역	5,000이상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계보전지역, 임시생태계보전지역	5,000이상
	자유보전지역	
	완충지역	7,500이상
자연공원법	자연보전 지구	5,000이상
	자연환경지구	7,500이상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	5,000이상
	습지주변관리지역	7,500이상
	습지개선지역	7,500이상
하천법, 소하천 정비법 및 지하수법	하천구역	10,000이상
	소하천구역	7,500이상
	지하수보전구역	5,000이상
산림법	공익임지	10,000이상
	공익임지외지역	50,000이상

3. 환경오염 분쟁조정 제도

1) 개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은 불법행위 여부에 따라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의 특수성, 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가해자를 확정하기가 어렵고, 특히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그 밖의 불법행위 요건인 위법성 및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등 환경피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는 사실상 매우 어렵다.

환경오염 피해라 함은 사업활동 및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하며, 사업장 등이 2개 이상이고, 어느 사업장에 의하여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각 사업자가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피해가 분명하지 않은, 즉 피해발생을 우려하는 차원의 분쟁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로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앙환경위원회)와 지방환경위원회(지방환경분쟁 위원회)가 있다. 중앙환경위원회는 환경부에 설치하고, 지방환경위원회는 특별시, 각 광역시 및 도에 설치되어 있다.

2) 분쟁조정제도의 절차

환경피해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관계 당사자 모두 중앙 또는 관할 지방환경분쟁위원회에 알선 또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내용으로는 금전상의 손해배상 청구 외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변경,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내지 보완이나 조업시간의 변경·제한, 공장이전 같은 사안이 포함된다.

피해 당사자는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손해배상의 책임에 대한 재정을 신청하고 알선위원 또는 조정위원에서 알선, 조정을 중단하거나 당사자가 조정안의 수락을 거부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은 재정을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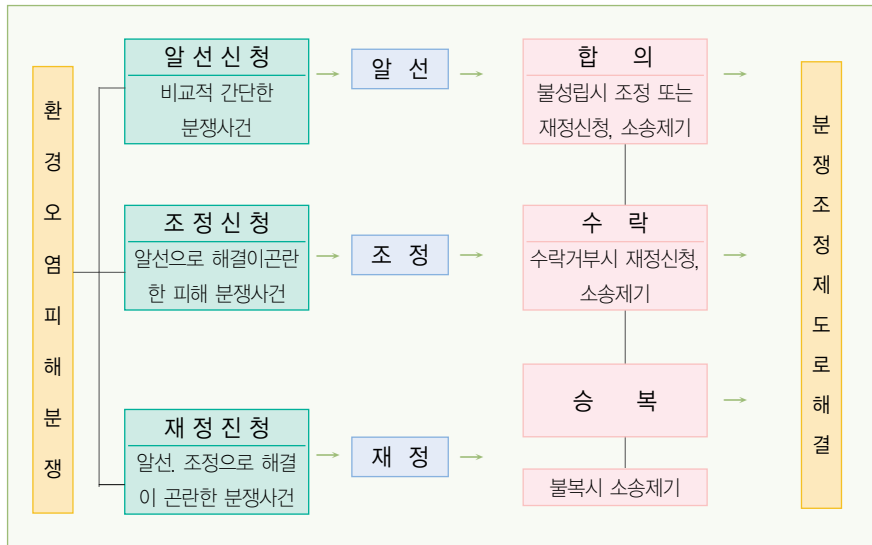
환경오염피해 분재조정제도는 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알선·조정·재정의 세 가지 단계별 절차가 있다.

할 수 있다.

환경오염피해 분재조정제도는 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알선·조정·재정의 세 가지 단계별 절차가 있다.

알선이란 알선위원회가 분쟁 당사간에 합의하기 쉬운 여건을 만들어 화해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며, 조정은 알선이 어려운 경우 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양측에 그 수락을 권고하는 방법이며, 알선 또는 조정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위원회가 피해 책임의 유무와 이에 따른 피해 배상액을 재판절차에 준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재정위원회의 결정은 법원의 판결과 유사한 효력을 가지며, 분쟁당사가 기일 내에 별도의 상식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내용대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된다.



※ 단계별 분쟁조정 절차

4. 환경오염인자 부담제도

1)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고 앞으로의 지속적인 개발에 따른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개선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이나, 한정된 재정

으로는 한계가 있다.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의 오염에 기여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구체적인 부과대상, 부과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였으며, 법적 근거로서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을 제정·운용하고 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유통, 소비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여 환경오염에 기여도가 높은 시설물과 자동차로서, 시설물은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중 농림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에 소재한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cm²이상인 시설물로 주택은 제외되며,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한 등록된 차량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하고 있다.

생산, 제조부분의 시설물과 삼원 촉매 장치부착 및 기원인자 부담을 하고 있는 휘발유사용 자동차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시설물에 대하여는 연로 및 용수사용량에 오염물질단위당 피해비용 또는 복구비용을 감안한 단위당 부과금액, 인구밀도 등을 감안한 지역 계수 및 오염유발계수 등을 곱하여 부과하고, 경유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배기량, 지역계수, 차량에 따라 차등부과하기 때문에 결국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2회 매반기(3월,9월)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하고 있으며, 전년도 하반기분은 익년 3월말까지, 당해연도 상반기분은 그 해 9월말까지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부담금 산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 신청할 수 있으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이 5%부과되고 증가산금은 없으며, 재산 압류 등의 체납처분절차에 의거 강제 징수하게 된다. 특히 자동차개선 부담금은 사후부과로 매매 등 차량소유 이전 후에 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광양시의 최근 부과·징수실적을 아래에 나타내었다.

〈표1-18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부기한	비고
상반기	매년 6월30일	1. 1~6. 30	당해 9월30일까지	
하반기	매년12월31일	7. 1~12.31	익년 3월31일까지	

〈표1-183〉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실적

(금액단위: 천원)

구	분	부과건수	부과금액	징수금액	징수율(%)
1999	자동차	19,374	623,145	522,452	83.8
	시설물	2,467	175,425	151,572	86.4
2000	자동차	24,850	928,725	781,497	84.1
	시설물	2,786	186,941	161,988	86.6
2001	자동차	24,998	882,934	730,423	82.7
	시설물	3,117	201,866	173,353	85.8

자료 : 광양시 환경관리과, 2002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납입되고,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추진하는 환경개선 중장기종합계획의 대기, 수질개선사업, 환경기술 개발 등에 지원되며,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환경산업 국산화, 기술개발자금에 지원되는 등 환경개선 목적에 사용되고 있다. 다만 징수액의 10%가 징수 교부금으로 도(1%), 시(9%)에 교부되고 있는데 교부금만으로 담당자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인 바, 징수 교부금을 50%선까지 상향 조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제도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배출부과금 제도

배출부과금은 폐수·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오염도 검사결과 오염물질의 양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될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초과 배출된 오염물질이 적정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응하는 경제적 부담을 주어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하여오고 있으며, 그동안 수차례 제도가 개선되어 현재는 사업장 규모와 초과율 등에 따라 부과하는 초과 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여도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기본 부과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부과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징수법을 준용한 가산금 및 증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된다.

배출부과금은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납입되고, 징수금액 10%를 징수비용으로 도 1%와 시에 9%가 지급되며, 그 외의 부과금은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 등 국가환경오염 방지사업과 사업자의 방지시설설치자금 용자 시 환경오염 방지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3년 간 배출부과금 부과는 총 33,760천원을 부과하였다.

〈표1-184〉

광양시 배출부과금부과 및 징수실적

(금액단위 : 원)

연도별	계		기본부과금		초과부과금		비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38	33,760,470	20	3,192,750	18	33,760,470	
1999	7	4,469,320	-	-	7	4,469,320	
2000	8	4,164,420	4	279,150	4	3,885,270	
2001	23	25,126,730	16	2,913,600	7	22,213,130	

자료 : 광양시 환경관리과, 2002

수질개선부담금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 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할 목적으로 '95년 1월 5일 제정된 먹는 물 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먹는 샘물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먹는 샘물 판매가 액의 20%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 징수된 부담금은 전액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귀속되며, 그중 10%는 시·도의 징수비용으로 교부되고, 잔여금액의 50%는 먹는 샘물을 제조하기 위하여 개발된 취수정이 위치한 시·군의 세입으로 교부되며, 나머지 50%는 환경부에서 관리·집행한다. 우리 시에서는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실적은 전혀 없는 형편이다.

3) 물 이용부담금 제도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동 수계의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2002년 1월 14일자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었고, 2002년 하반기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동 수계에서 취수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동 수계 밖의 모든 지역에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동·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그 상류지역 중 당해 댐으로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관련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을 받게되는 주민에 대해서는 물 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주민 지원사업과 수질오염원 개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물 이용부담금은 동·수계에서 취수하여 사용되는 물 톤당 2002년에는 110원, 2003년에는 120원을 징수하게 되는데 상수도요금에 합산하여 부과되며, 징수된 부담금은 일정한 배분방식에 따라 자치단체에 배분하여 수질

개선사업,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물 이용부담금 산출은 상기 방법 외에도 오염부하량 할당대상자(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일정기준을 설정하여 부과하게 되며,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 조례 등으로 정하게 된다.

제5절 자율적 관리기반 조성

1. 자가측정제도

자가측정제도는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그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자율적으로 확인하여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요인을 사전에 억제·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자가측정능력이 없는 사업자의 의무를 보충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비와 인력을 갖춘 자로 하여금 자가측정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물질측정대행업, 수질오염물질측정대행업, 소음진동측정대행업을 등록토록 하여 측정대행하게 하고 있다.

측정 횟수는 배출시설의 종별에 따라 주 1회 이상, 월 2회 이상, 2월 1회, 분기 1회 이상 등 일정한 주기를 두고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특정대행 의뢰시 성적서를 발급 보관하며 자가측정이 가능한 사업자는 자가측정기록부를 비치하도록 하였다. 법이 개정되어 자가측정제도도 권고사항으로 개선되었으며 자가측정자료는 배출부과금 및 기본배출부과금 부과자료로 활용된다.

2. 환경마크 제도

(1) 개요

환경마크제도는 제조·유통, 사용 폐기과정에서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